

의안번호	2212790
의 퇴 인	서왕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5.
추계번호	25A4825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6 신설 (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 ¹⁾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제22조제3항 ²⁾ 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이자 감면을 요청한 때에는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10조 ³⁾ 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)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③ 기금의 관리·운용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3)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10조(소상공인정책심의회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
4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6 신설 (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국가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할 수 있음
- 현행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⁴⁾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경우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특별재난지역⁵⁾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도 이자 감면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

4)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(중소벤처기업부고시)

제22조(지원조건 등)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,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) 중소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(...) 중소기업의 시설·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, 상환 유예,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. (단서 생략)

5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말함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(...)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(...)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
2.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
3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이자 감면을 통한 조속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, 이자 감면 시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재난대책심의위원회⁶⁾를 거치는 현행과는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될 경우 이자 감면 대상자나 감면액이 확대되어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수입 회수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⁷⁾으로 수납되므로, 개정안에 따라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(이자율 인하, 연체이자 감면, 대환대출을 통한 이자 감면 등)을 지원할 경우 기금수입이 감소

□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이자 감면 방식에 따라 이자율 인하폭, 연체이자 탕감 수준 등을 바탕으로 1인당 감면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이자 감면을 받을 소상공인의 수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은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감면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감면방식, 1인당 감면액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
- 참고로,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중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

6) 「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」 제23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의 경우에 한함

7) 직접대출의 이자수입은 기타민간이자수입(544), 대리대출의 이자수입은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(542) 목으로 수납

* 참고: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비교

구분	직접대출(Direct Loan)	대리대출(On Lending)
개념	· 정부(또는 기금관리주체)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대상(소상공인)을 선별하고 직접 융자해주는 방식	· 금융기관이 일정수수료(1% 내외)를 받고 정부(또는 기금관리주체)의 융자업무를 대리하는 방식(보증기관 보증서 필요)
장점	· 정책자금 취지에 맞는 지원대상(특히 저신용자 위주) 선별 가능 · 지원조건 설정 및 변경 용이 · 소상공인 대출절차 및 서류간소화 · 보증수수료(1% 내외) 부담 감소	·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최소화(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부실관리)
단점	·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의 재정 충당(보조) 필요 · 직접대출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(조직 운영, 인건비, 시스템 관리 등)	· 정책자금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 한계 ·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채권 회수 중심의 운용방식으로 저신용자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·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(1% 내외) · 은행수수료 발생(1% 내외)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“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피해)”의 대출 건수는 5,771건, 대출 잔액은 총 3,453억원임
(2025.12. 31. 기준)

[표]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피해) 용자 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잔액건수	잔액금액
직접대출	30	17
대리대출	5,741	3,436
합계	5,771	3,453

주: 2025.12.31. 기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